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참전유공자단체 회원범위 유족 확대〉

■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39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참전유공자단체 회원범위 유족 확대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4. 6. 25.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여 남기기 위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함.

이에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

Ⅲ. 검토의견 : 참전유공자단체 회원범위 유족 확대

□ 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의 유족도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u>6·25전쟁 참전 유공자</u>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u>6·25전쟁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u>6·25전쟁 참전유공자</u>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	제19조(회원의 자격) ----- -- <u>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u> ----- ----- ----- ----- ----- ----- ----- -----

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 ----- -----.
제24조(사업) 6·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4조(사업) ----- -----.
1. <u>6·25전쟁 참전유공자</u>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1. <u>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u> ----- -----
2. <u>6·25전쟁 참전유공자의</u>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2. <u>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u> -----
3. <u>6·25전쟁 참전유공자의</u>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3. <u>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른 참전 관련 법정 공법단체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있으며, 그 회원으로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인정하고 있음.¹⁾

☐ 6·25참전유공자회는 현재 회원이 3만8천여명(2024년 6월 기준)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2세에 달해 곧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그 유족은 동 단체의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법에 따른 단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의 범위를 그 유족까지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계속하여 국가의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훈단체의 존속 및 저변 확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 따른 17개 공법단체 중 유족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4개²⁾와 유공자와 유족 모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2개³⁾를 제외한 11개 단체는 회원이 유공자 본인인데, 이 중 신체적 희생이 없는 유공자 단체는 모두 유공자 본인만이 회원이 될 수 있음.

○ 이는 유공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유·가족을 제대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대신 지원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단체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유가족 등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단체 회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임.

2)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3)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훈단체 회원의 범위〉

(2024. 6. 30. 현재, 단위 : 명)

단체명	가입 대상자수	회원 범위	신체적 회생 유무	관련 법률
상이군경회	105,014	본인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3조제1호
전몰군경유족회	93,207	유족(부모, 자녀)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3조제2호
전몰군경 미망인회	58,302	유족(배우자)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3조제3호
광복회	8,922	본인, 유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이하)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3조제4호
4·19민주혁명회	133	본인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3조제5호
4·19혁명희생자 유족회	183	유족 (배우자, 부모, 자녀)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3조제6호
특수임무 유공자회	3,911	본인, 유족 (배우자, 부모,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9조
4·19혁명 공로자회	237	본인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3조제7호
재의동지회	3	본인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3조제8호
무공수훈자회	54,672	본인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3조제9호
고엽제전우회	122,137	본인	×	고엽제법 제14조
6·25참전 유공자회	38,346	본인	×	참전유공자법 제19조
월남전참전자회	172,567	본인	×	참전유공자법 제19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2,111	본인	○	5·18유공자법 제57조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1,046	유족	○	5·18유공자법 제57조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1,321	본인	×	5·18유공자법 제57조
재향군인회	1,451,609	본인	×	재향군인회법 제5조

자료 : 국가보훈부

□ 또한, 신체적 희생이 없는 유공자 본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의 회원범위를 유·가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회원의 고령화 문제를 마찬가지로 지니고 있는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회원자격 확대 요구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회원은 상징성과 선양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공자 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유공자가 신체적 희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직계유족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점, 국외 참전단체도 대부분 본인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유족은 단체 준회원으로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 1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비 용 추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6.25 참전 유공 사회	사업비	호국보훈의달 위로행사 등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운영비	사무비	81,692	81,692	81,692	81,692	81,692	
		중앙회 활동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지부 운영비(594×17개×12월)	121,176	121,176	121,176	121,176	121,176	
		지회 운영비 (205×231개×12월)	568,260	568,260	568,260	568,260	568,260	
		합계	841,128	841,128	841,128	841,128	841,128	
	인건비	중앙회 (‘24년 기준)	회장(2,153×12)	26,611	27,409	28,232	29,079	29,951
			부회장(1,879×12)	23,224	23,921	24,639	25,378	26,139
			감사(1,879×12)	23,224	23,921	24,639	25,378	26,139
			사무총장(1,831×12)	22,631	23,310	24,009	24,730	25,472
			국장(4명×1,772×12)	87,608	90,236	92,943	95,731	98,603
			과장(4명×1,679×12)	83,010	85,500	88,065	90,707	93,428
			사원(8명×1,650×12)	163,152	168,047	173,088	178,281	183,629
			운전원(1명× 1,760×12)	21,754	22,406	23,078	23,771	24,484
		지부 (‘24년 기준)	지부장(17명×1,714×12)	360,146	370,950	382,079	393,541	405,347
			사무국장(17명×1,668×12)	350,480	360,995	371,824	382,979	394,469
			과장(16명×1,656×12)	327,491	337,315	347,435	357,858	368,594
			사원(1명×1,650×12)	20,394	21,006	21,636	22,285	22,954
		퇴직충당금		117,836	121,371	125,012	128,763	132,626
		보험료		93,603	96,411	99,304	102,283	105,351
		합계		1,721,164	1,772,799	1,825,983	1,880,762	1,937,185
	총합		2,672,292	2,723,927	2,777,111	2,831,890	2,888,313	

※인건비는 ‘24년 기준으로 3% 증가율 적용

참고 2

보훈단체 의견

단체명	찬반여부	세부 의견
상이군경회	반대	국가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함. 최근 보훈법령은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강화한다는 기조가 반영되어 당사자 중심의 예우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보훈단체는 엄격한 기준으로 엄선된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은 당사자들의 생전에 예우하고 가족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당사자가 없는 보훈단체는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희석시키는 것임.
6·25참전유공자회	적극 찬성	6·25전쟁 조국을 수호한 참전 용사들의 위국헌신 호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공법단체가 필요, 현재 생존 6·25참전유공자는 39천여명 및 평균연령 93세로 회원 활동이 어려워 단체존립 위기가 있어 6·25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위국헌신의 6·25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월남전참전자회	적극 찬성	회원들의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 회원자격의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